

日帝가 패망하고 우리나라가 광복한지도 48년째 접어들고 있지만 日本의 戦後배상책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태평양전쟁 포로들과 그 유가족들의 모임인 對日本國侵略清算 促進會(民族會)를 7개 민간 단체에 따르면 65년 체결된 韓日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에는 한국인 B.C 급 전범자, 사할린 강제징용자, 정신대 등에 관한 배상 규정이 없고, 징집이든 간접이든간에 이들에 대한 배상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일기본조약을 무효화시키고 對日협상을 다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

현재 일제의 강제징집과 착취 등에 대한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단체는 태평양전쟁의상자유족회, 태평양전쟁한국유족회, 한국원폭피해자협회, 中蘇인산가족협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독립유공자협회 등이다.

태평양전쟁의상자유족회(회장 이희의)를 비롯한 자구인 유족 노무자 유족회, 전국의 1만5천여명의 이들과 同會 權熙俊사무국장(55)은 "우리 국민은 7백50만명이 태평양전쟁 피해자인데 말한다. 일본정부는 65년 체결된 청구권협정의 따라 정당한 배상과 사할린 2만1천9백19명 중 8천5백52명의 대해서만 75년부터 77년까지 우리정부를 통해 16만3천원의 배

상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태평양전쟁부상자나 해방후그루산으로 사망한 직접인 피해자들은 배상에 서제외됐다. 또한 배상기간을 45년 8월15일 이전으로 한정해 미귀환 군인

日戰後賠償 아직 未청산

1992. 8. 11



군수 정신대 등에 대한 배상금 1억 6천만 원만 지급된 것이다. B.C급 전범으로 분류된 자를 포함한 한국인 26명과 포도수용소에 수용된 1백40명의 징역자에 대한 배상 또한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할린에 강제이주당해 귀국 못한 약 4만명을 포함 (10명 사망)도 배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들은 강제노역당하면서 체화된 일금조차 받지 못했다. 65년 청구권협정 당시 인고의로 은폐했다가 최근야 밝혀진 일본은행 공과 한도노역자 미지급금 3천여원은 새로운 對日賠償을 통해서 지급돼야

이 발생하면 이를 파기할 수 있다는 국제법상의 「사정변경의 원칙」을 예로 든다. 그렇기 때문에 65년 체결된 韓日협정 총결 된 것이 아니라 일당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65년 韓-日 청구권協定과 被爆者·노역자 임금등도

한다고 민간단체들은 주장한다.

정신대문제 대책협회는 32년부터 45년까지 약 20만 명의 한국여성들이 정신대에 끌려간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그러나 정신대문제는 65년 한일협상 때 전혀 거론조차 없었다. 그런데 지난 해부터 이들의 보도로 문제로 제기됐다.

관계전문가들은 戰後배상문제에 대해 외교관해상 국가간의 합의는 지켜져야 하지만 예기치 못한 상황

신대동원 등은 원래 미해결과제였던 만큼 日本정부 는 마땅히 이들에게 배상 해야 된다고 말한다. 보사부가 관리하고 있는 원폭피해자는 전국의 2천 2백82명이다. 그러나 한국 원폭피해자협회는 '신분노출을 꺼려 신고하지 않은 사람들'을 포함하면 1만5천 명이 넘는다는 주장이다.

한 그 직계가족이 소련에 만 50만명 중 유족도 2백 50만명의 살고 있다고 中 蘇인산가족회는 주장한다. 일제의 억압을 피해서 만주로 떠났다가 그대로 머문채 귀국하지 못한 중국 거주한 이들에 대한 처리도 결국 원안제자인 日本정부 가 배상해야 한다는게 李斗勳회장(55)의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일본이 패전한 뒤에 사할린에서 귀국하지 못한채 남아있다가 최근에 열구 귀국한 79명

女子挺身隊

사할린 징집자

한국인 戰犯者